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8. 7. 14. 96다17257 등).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일 필요는 없고,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므로 그 범위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작은 사회에 관한 사실을 그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공표할 때에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대판 1997. 4. 11. 97도88판결, 대판 1989. 2. 14. 88도899).

‘오로지’라는 요건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사익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하여 사익의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은 조각된다는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나. 보도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1) 보도의 진실성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보도 내용은 실제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 내용이 지엽 말단적인 부분이나 사소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진실을 알 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의무와 확인 절차를 모두 거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88. 10. 11. 85다카29, 대판 1997. 9. 30. 97다24207). 그 판단 시점은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 후에 드러난 객관적 사실이나 자료도 참고하여야 한다(대판 1996. 8. 20. 94다29928).

IV. 본안소송에서의 구제수단 {손해배상 +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정정보도)}

1. 손해배상

가. 재산상 손해

언론 사건에서도 재산상 손해는 일반 민사 사건에서와 같이 언론 보도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의 손해에 한정된다.

나. 정신적 손해

민법 제751조는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 동안의 실무와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언론 사건에서 손해액의 중점은 위자료에 있다.

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정정보도, 금지청구)

가. 민법 제764조의 규정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및 금전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결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상회복 처분을 명하도록 한 것이다.

종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어 오던 것이 '사죄광고'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1991. 4. 1. 선고 89헌마160호 결정에서 양심의 자유에 반함을 주된 이유로 사죄 광고를 명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형식의 원상회복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정정보도

'정정보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보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허위사실의 보도)이 있었음을 알리고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를 같은 보도매체 혹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알리고 이로써 명예 회복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정정보도문 가운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요지까지 아울러 게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정정보도문의 게재의무는 원칙으로 출판물 등의 발행인과 방송사업자만이 부담한다. 취재기자나 편집인 등은 이러한 의무가 없다.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할 때에는 그 시기를 정해야 하는데, 명예회복을 구하는 경우 실무례는 대체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에 게재하도록 명한다.

정정보도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도 매체를 통하여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목, 본문의 활자체와 활자의 크기, 게재할 면과 위치, 방송

할 시간대와 위치도 특정해 주어야 하는데, 반드시 원래 보도위치나 게재 면 등에 구속받을 필요는 없다.1) 다만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원칙상 법원은 정정보도문의 내용이나 게재 위치, 방송 시간대 등을 청구한 것보다 무겁게 변경할 수는 없다.

다. 간접강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 의무를 명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해 놓은 방법이 간접강제이다(민사집행법 제261조). 다만 간접강제는 실제로는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그 실행을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에 정정보도를 명할 경우에만 간접강제 주문을 붙일 수 있다.2)

라. 금지청구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은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행사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발생 또는 확대의 사전예방이라는 청구권의 성격상 오히려 가처분절차에 의함이 일반적이다.

3. 구제방법의 경합 (손해배상 + 정정보도 등)

민법 제764조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은 독자적으로 혹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하여질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피해자 구제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정정보도청구 등)을 배합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 1) 【정정보도문 예시】 ○ 일간신문의 경우 : 피고 주식회사 모 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모 일보(위 피고 발행 신문임)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2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 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 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 방송의 경우 :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21:00 ‘모 뉴스’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정정 보도문’이라는 제목과 ‘모 회사 직원들의 비리 보도에 관하여’라는 부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함께 뉴스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간접강제를 명하는 주문 : 만약 피고가 위 제2항 기재 기간 안에 위 제2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썬한 돈을 지급하라.